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회사명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인크레더블대부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	☐	☐	☐
기타			
☐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법 제35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1. 고객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미비한 서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심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 채무자가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 후 3개월 이상 미납 시, 합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외 다른 금융사 다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채무조정요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채무조정안
 4. 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인크레더블대부(☎ 02-2135-5574)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인크레더블대부 (☎ 02-2135-5574)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